

「과학기술기반 벤처기업생태계」의 선순환적 성장을 위한 제도 및 정책 개선 방안 연구
-연대보증 / 회사법 / M&A 부문의 국제간(한-미-일-중) 비교 중심으로

| 발표자 | 이영달(동국대학교) / 권혁욱(일본대학교) / 김도현(국민대학교) / 최성진(한양대학교) / 하규수(호서대학교)

I. 과학기술기반 벤처기업생태계와 제도환경

1. 생태학적 관점의 벤처기업생태계
2. 신제도이론/조직생태학/클러스터이론과 벤처기업생태계
3. 주요국의 과학기술기반 벤처기업생태계 조성과 개발을 위한 정책적 고찰과 평가

<그림> 주요국의 창업촉진 정책 실행 평가

주요국의 [Startup Initiative] 실행의 평가	
시사점	1. 창업(Startups)은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 효과 기여를 할 것으로 일반화 할 수 없다. 2. 실제적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창업기업의 성장(scale-up)에 달려 있다. 3. 창업과 창업기업의 성장은 [시장조건(markets)]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다. - The Power of Market 4. 시장조건의 영향은 1) 유효시장(내수+準내수+확장가능시장; the effective market)의 성장성, 2) 시장 공정성(market fairness), 3) 금융접근성(accessibility of financial resources)에 기초한다.
성공적 성과창출 국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인도 / 중국
관점 (perspective)	[국가혁신전략]과 새로운 [공동체 가치체제]로 접근
원칙 (principle)	1. 국가 최고리더십의 높은 이해와 정책적 몰입 2. 입법을 통한 법률적/제도적/가버넌스적 기반 환경 조성 3. [교육과 문화]가 지속가능한 선순환 체계 구축의 출발점이자 재점화점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 4. 민간 주도 환경 조성. 정부의 역할은 [시장 개발자-촉진자-조정자-실패의 완충자]적 역할 5. 지속가능한 선순환 체계 구축 중심 정책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기술(혁신)-시장-자본 환경 • 교육(학교교육 포함)-창업-성장-글로벌 확장-수확(exit)-위기관리-회사정리-재창업(연속창업)
실행 (pract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 교육혁신(내부 육성), 숙주주의형 창업정책(외부 유입), 기업가적 문화(entrepreneurial culture)의 확산 • 기술(혁신): 담대한 과학기술 투자, 실제적 R&BD 지원(예, i-Corps), 글로벌 기술협력 촉진 • 시장: 보유시장(내수 공공 부문 기회 확대) vs. 개발시장(국가 외교전략과 연계한 해외 시장 개발) • 자본: 투자회수 사이클 단축 될 수 있도록, 투자 실패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제한적 성과창출 국가	독일,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덴마크, 핀란드

Copyright © 2016, Dr. Young D. Lee. All Rights Reserved.

*자료 출처 : 이영달(2016), 국가수준에서의 기업가정신 생태계의 이해와 개발, 한국중소기업학회 기업가정신 연구회

II. 회사법

1. 회사법의 총론적 고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企業; an enterprise)은, 영리(營利)를 얻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조직체이며, 출자(出資) 형태에 따라 사기업(私企業), 공기업(公企業), 공사 합동 기업(公私合同企業)으로 나눈다¹⁾. 회사(會社; a company)는, 상법 제169조(회사의 의의)에서 “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라고 규정되고 있다. 즉, 우리의 상법에서는 회사와 법인을 동일체화하고 있다. 회사는 법리적으로 영리성, 사단성, 법인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p><회사의 특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리성 (營利性) : 대외적 활동을 통하여 이익을 추구하고 이를 통해 취득한 이익을 사원에게 배당의 형태로 분배 사단성 (社團性) : 일정한 목적을 추구하는 복수의 사원의 결합체 법인성 (法人性)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회사는 독립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 즉 법인. 따라서 회사는 사원으로부터 독립하여 권리·의무를 취득할 수 있으며, 사원은 회사에 대해 직접적인 권리를 갖지 못한다. ② 회사의 법인격은 공공의 편이나 이익 또는 대외적인 법률관계의 간명한 처리를 위해 정책적으로 인정된다. ③ 법인격 남용에 대한 규제로서 법인격의 박탈제도: 회사해산명령(제176조), 회사해산판결(제241조, 제520조) - 법인격부인제도: 법인격부인의 법리(법인격무시이론)등이 있다.
--

*자료출처: 이영달(2017), 스타트업에 맞지 않는 상법상 ‘주식회사’ 제도 개선, 스타트업법률지원단 공개포럼 발표 자료

2. 미국(영국)의 회사법 : 법률제정 시 ‘회사법(corporate law)’으로 단행법 제정

<표> 미국 뉴욕주의 회사 유형과 특성

	개인회사 Sole Proprietorship	합명회사 General Partnership	유한합자회사 Limited Partnership	C 주식회사 C Corporation	S 주식회사 S Corporation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설립 요건 및 비용	없음 단, 상호명 등록증을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	없음 단, 상호명 등록증을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	없음 단, 상호명 등록증을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	없음 단, 상호명 등록증을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	없음 단, 상호명 등록증을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	없음 단, 상호명 등록증을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
경영관리	개인회사 소유자가 담당	각 업무집행 조합원은 조합을 경영 및 지배할 수 있는 전적인 권한을 보유	업무집행 조합원만 회사 경영관리 권한을 보유 출자조합원들은 경영관리에 참여할 수 없음	경영관리는 이사회가 관장하며, 이사회 이사들은 주주들이 선출 (주주가 이사가 될 수 있음)	C 주식회사와 동일	구성원들이 원하는 경영관리구조 선택 구성원 경영형태 또는 경영관리자 경영형태 가능

1) 경제용어사전

	개인회사 Sole Proprietorship	합명회사 General Partnership	유한합자회사 Limited Partnership	C 주식회사 C Corporation	S 주식회사 S Corporation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운영상 형식적 절차	매우 소수	매우 소수	소수	기업의 형식적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함	C 주식회사와 동일	소수
수명	소유주의 사망 또는 은퇴 시에 해산	조합원 중 한명의 사망 또는 파산, 또는 그 외 법적인 사건에 따라 해산	영구히 지속될 수 있지만, 합의하는 경우 또는 일반 조합원(들)이 대신하는 사람없이 그만 두는 경우 해산	영속적 존재	C 주식회사와 동일	구성원들이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영속적 존재
개인 차원의 책임	소유주가 무한정의 개인적 책임을 짐	모든 업무집행 조합원들이 공동 및 개인적 책임을 짐	유한책임은 유한책임조합원 에게만 적용 됨 업무집행 조합원들은 공동 및 개인적 책임을 짐	모든 주주들이 유한책임을 짐	C 주식회사와 동일	모든 구성원들이 유한책임을 짐
조세 구조	소유주가 개인적 차원에서 납세	조합원들이 개인적 차원에서 납세	조합원들이 개인적 차원에서 납세	회사는 소득에 대해 납세,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배당금에도 개인적 차원에서 과세	주주들은 모든 소득에 대해 개인적 차원에서 납세	구성원들이 개인적 차원에서 납세 (대신 기업조세 구조를 채택할 수 있음)
이중과세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예	아니오	아니오
도관 과세 (pass through)	예	예	예	아니오	예	예
소유주 자격 제한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반드시 비거주 외국인이 아닌 개인이어야 함 (일부 신탁 및 유산은 허용)	없음
소유주 수	1명. 단일 소유주	최소 2명 최대 제한은 없음	최소 2명 최대 제한은 없음	제한 없음	최대 주주 100명	제한 없음

*자료출처: NYC Business Solution Center

<표> 미국의 연도별 회사유형 현황(1978-2012)

Year	Non-Farm Sole Props	C Corporations	S Corporations	Partnerships	Farms	Total
1978	8,908,289	1,898,100	478,679	1,234,157	2,704,794	15,224,019
1979	9,343,603	2,041,887	514,907	1,299,593	2,605,684	15,805,674
1980	9,730,019	2,165,149	545,389	1,379,654	2,608,430	16,428,641
1981	9,584,790	2,270,931	541,489	1,460,502	2,641,254	16,498,966
1982	10,105,515	2,361,714	564,219	1,514,212	2,689,237	17,234,897
1983	10,703,921	2,350,804	648,267	1,541,539	2,710,044	17,954,575
1984	11,262,390	2,469,404	701,339	1,643,581	2,694,420	18,771,134
1985	11,928,573	2,552,470	724,749	1,713,603	2,620,861	19,540,256
1986	12,393,700	2,602,301	826,214	1,702,952	2,524,331	20,049,498
1987	13,091,132	2,484,228	1,127,905	1,648,035	2,420,186	20,771,486
1988	13,679,302	2,305,598	1,257,191	1,654,245	2,367,527	21,263,863
1989	14,297,558	2,204,896	1,422,967	1,635,164	2,359,718	21,920,303
1990	14,782,738	2,141,558	1,575,092	1,553,529	2,321,153	22,374,070
1991	15,180,722	2,105,200	1,696,927	1,515,345	2,290,908	22,789,102
1992	15,495,419	2,083,652	1,785,371	1,484,752	2,288,218	23,137,412
1993	15,848,119	2,063,124	1,901,505	1,467,567	2,272,407	23,552,722
1994	16,153,871	2,318,614	2,023,754	1,493,963	2,242,324	24,232,526
1995	16,423,872	2,321,048	2,153,119	1,580,900	2,219,244	24,698,183
1996	16,955,023	2,326,954	2,304,416	1,654,256	2,188,025	25,428,674
1997	17,176,486	2,257,829	2,452,254	1,758,627	2,160,954	25,806,150
1998	17,398,440	2,260,757	2,588,081	1,855,348	2,091,845	26,194,471
1999	17,575,643	2,210,129	2,725,775	1,936,919	2,067,883	26,516,349
2000	17,902,791	2,184,795	2,860,478	2,057,500	2,086,789	27,092,353
2001	18,338,190	2,149,105	2,986,486	2,132,117	2,006,871	27,612,769
2002	18,925,517	2,112,230	3,154,377	2,242,169	1,995,072	28,429,365
2003	19,710,079	2,059,631	3,341,606	2,375,375	1,997,116	29,483,807
2004	20,590,691	2,039,631	3,518,334	2,546,877	2,004,898	30,700,431
2005	21,467,566	1,987,171	3,684,086	2,763,625	1,981,249	31,883,697
2006	22,074,953	1,968,032	3,872,766	2,947,116	1,958,273	32,821,140
2007	23,122,698	1,878,956	3,989,893	3,096,334	1,989,690	34,077,571
2008	22,614,483	1,797,278	4,049,943	3,146,006	1,948,054	33,555,764
2009	22,659,976	1,729,984	4,094,562	3,168,728	1,924,214	33,577,464
2010	23,003,656	1,686,171	4,127,554	3,248,481	1,886,058	33,951,920
2011	23,426,940	1,664,553	4,158,572	3,285,177	1,867,208	34,402,450
2012	23,553,850	1,635,369	4,205,452	3,388,561	1,835,687	34,618,919

Source: Internal Revenue Service, Statistics of Income, published and unpublished data.

*자료출처: Joint Committee on Taxation, Choice Of Business Entity: Present Law And Data Relating To Corporations, Partnerships, And S Corporations (JCX-71-15), April 10, 2015.

3. 중국의 회사법 : 1993년 회사법(公司法) 제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2013修订)’

<표> 회사 유형

중국	한국	미국
개인독자기업		Sole Proprietorship
보통합화기업	합명회사	General Partnership
유한합화기업	합자회사	Limited Partnership
특수한 형태의 보통합화기업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유한책임공사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	Close Corporation
고분유한공사	주식회사	Public Corporation

<표> 지배구조표

회사 분류	의사결정기구				집행기구			법정 대표자
	투자자 (주주)총회	동사회	집행동사	최고 의결기구	동사장	집행동사	총경리	
중외합자경영기업 (유한책임공사)	X	√	X	동사회	√	X	√	동사장
외자기업 (유한책임공사)	√	√	X	투자자총회	√	X	√	동사장 혹은 총경리
	√	X	√	투자자총회	X	√	√	집행동사 혹은 총경리
외상투자 고분유한공사	√	√	X	주주총회	√	X	√	동사장 혹은 총경리

4. 일본의 회사법 : 2005년 상법에서 분리 단행법화(会社法: 총4편으로 구성, Companies Act로 번역 명명)

-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yūgen sekinin jigyō kumiai)
- Kabushiki kaisha (K.K.), similar to an Anglo-American corporation
- Godo kaisha (GDK), similar to an American limited liability company
- Gōmei kaisha (GMK), similar to an Anglo-American general partnership
- Gōshi kaisha (GSK), similar to an Anglo-American limited partnership

5. 한국의 회사법 : 19세기 말 상법의 근간체계 유지, 2011년 부분 개정

<표> 회사의 종류와 기본 구조

회사 유형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적합회사 규모/형태		소규모 기업		중소기업(승계형) 스타트업(벤처캐피탈 투자 전)		대기업 상장 전체 기업 피전문투자 기업
구성		무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 (주주)
기관	회사대표	무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	대표이사	업무집행사원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 (집행임원설치회사)
	의사결정	무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	사원총회	업무집행사원	주주총회
	업무집행	무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	사원총회	업무집행사원	이사회
	감사기관	없음	없음 유한책임사원 (감시권)	감사(임의기관)	없음	감사, 감사위원회
출자		재산, 노무, 신용	재산, 노무, 신용 (유한책임사원 -재산)	금전 및 재산	금전 및 재산	금전 및 재산
지분양도		사원 전원의 승인	무한책임사원: 사원전원 유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 전원	자유	사원 전원의 동의 (정관에 따로 지정 가능)	자유

* 자료: 연구진 수정 작성, 원자료 출처: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표> 회사 유형별 설립 절차·소요시간·비용·최저자본금(2014년 세계은행 평가 기준)

구분	절차(단계)	시간 ¹⁾	비용 ²⁾	최저 ³⁾ 자본금	신설건수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주식회사	1단계 : 법인인감제작	0.5일	법인인감제작 : 30,000원	없음	57,352 (7.94%)	61,443 (8.13%)	69,329 (9.77%)	70,483 (10.3%)	79,215
	2단계 :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한 법인등록	3일	잔고증명 : 2,000원 법인등록면허세 : 4,085,946원 등기신청수수료 : 20,000원						
유한책임회사	1단계 : 법인인감제작	0.5일	법인인감제작 : 30,000원	없음	-	-	18	101	81
	2단계 :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한 법인등록	3일	법인등록면허세 : 4,085,946원 등기신청수수료 : 20,000원						
유한회사	1단계 : 법인인감제작	0.5일	법인인감제작 : 30,000원	없음	2,754	3,416	4,398	4,741	5,243
	2단계 :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한 법인등록	3일	법인등록면허세 : 4,085,946원 등기신청수수료 : 20,000원						
합명회사	1단계 : 법인인감제작	0.5일	법인인감제작 : 30,000원	없음	48	16	14	11	6
	2단계 :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한 법인등록	3일	법인등록면허세 : 4,085,946원 등기신청수수료 : 20,000원						
합자회사	1단계 : 법인인감제작	0.5일	법인인감제작 : 30,000원	없음	158	235	403	238	152
	2단계 :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한 법인등록	3일	법인등록면허세 : 4,085,946원 등기신청수수료 : 20,000원						
개인회사 (개인사업자)	1단계 :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인사 업자등록 신청	0.5일	없음	없음	722,613 (92.3%)	755,615 (92.1%)	709,645 (90.5%)	686,569 (90.1%)	-
	2단계 : 4대사회보험신고	0.5일							
총계					782,925	820,725	783,807	762,143	

1) 2014년, 온라인법인설립 시스템 소요시간 기준

2) GNI \$25,920 기준 (서울지역 3배 중과 적용)

3) 상법 개정으로 5,000만원 이상이었던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 제도가 폐지, 상법(제329조 1항)(2009.5.20.)

* 자료출처: 하규수, 이영달(2015), 세계은행 창업환경(starting a Business 조사평가 대응 연구, 창업진
흥원

6. 4개국 회사법의 비교 및 발전적 개선 방안

	한국	미국	중국	일본
회사법 단행법 제정 여부	상법 3편	최초 법률제정 시	1993년 제정 2013년 개정	2005년 상법에서 분리
회사(법인) 유형 수	5개	5개 (세분화 시 11개) 영국: 11개	5개(외자별도)	5개
회사(법인)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명회사 • 합자회사 • 유한책임회사 • 유한회사 • 주식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명회사 • 유한책임회사 • 유한합자회사 • S 주식회사 • C 주식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합화기업 • 유한합화기업 • 특수보통합화기업 • 유한책임공사 • 고분유한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명회사 • 합자회사 • 유한책임회사 • 유한합자회사 • 주식회사
회사 설립 표준 규약(사전 절차 안내)	없음	있음	있음	있음
각 회사 유형별 기본원리 법제화	없음	있음	있음	있음
각 회사 유형별 지배구조 법제화	미흡	충분	충분(독일 및 유럽식)	충분(영미식으로 개정)
법인 설립 대표 유형	주식회사(90%)	S 주식회사(40%) 최근 5년 유한책임회사 증가 등 다양하게 분포	유한책임공사	다양

< 시사점 >

- 한국을 제외 한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회사법을 ‘단행법’으로 제정하여 운용
- 일본의 경우도 영미식 회사 유형 채택
- 중국의 경우 독일과 미국의 유형 혼합
- 회사법에는 각 회사의 유형 별 기본원리/소유 및 지배구조/조세체계(과세대상 및 납세 대상) 등을 상호간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구조화 되어 있음
- 우리의 경우, 2005년 법무부에서 일본의 회사법 단행법 제정에 따른 상법 개정문제로 인해 검토하였으나, 뚜렷한 배경의 이유 없이 더 이상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였음
- 2014년 법무부에서 ‘한국상사법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한국에서도 ‘회사법’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였음. 본 검토 결과, 현재 한국의 상법 3편 회사의 경우, 1) 민법과의 상충 문제, 2) 조세체계와의 상충문제, 3) 상법과 특별법과의 상충문제 등 구조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거리가 있는 관계로 우리나라에서도 ‘회사법’을 단행법으로 분리 제정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 함.

< 소결론 >

- 우리의 경우도 회사법을 단행법화 하고, 회사의 유형을 ‘개인회사(자영업체)-유한책임 회사-합명회사-유한합자회사(합자회사와 유한회사를 병합)-조합회사(조합법 중 영리목적 내용의 회사법 편입)-주식회사(기업공개 전제)-주식회사(비 기업공개 전제)로 세분화 하는 과정이 필요 함(미국의 약 30년간 회사유형의 분포 변화 참조 필요)
- 주식회사 등을 제외하고는 대표자 연대보증 문제가 법리적으로 문제 되지 않음. 소유지분별 권한과 책임관계 문제가 명확 함
- 회사법을 단행법화 하면서, 주식회사의 경우 ‘물적회사’,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명확히 하며, 이에 따라 ‘대표자 연대보증’은 법률로써 금지 해야 함(영미법에서는 법률로써 금지하고 있음)

III. 연대보증

1. 연대보증제도의 총론적 고찰
2. 미국(영국)의 법인 대표자 연대보증
3. 중국의 법인 대표자 연대보증
4. 일본의 법인 대표자 연대보증
5. 한국의 법인 대표자 연대보증
6. 4개국 법인 대표자 연대보증제의 비교 및 발전적 개선 방안
 - 주식회사 이외의 다른 회사 유형의 경우 대표자 연대보증 쟁점은 크지 않음
 - 한국 연대보증이 갖는 1) 검색·최고·항변권 없음, 2) 부종성의 원칙 미적용 등은 일반 법인(유한책임회사 등) 대표자들에게 적용하는 문제는 법리상 제약 사항임
 - 주식회사 이외의 대표자 연대보증은 법리적으로 문제 없음. 미국의 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합자회사 등은 ‘인적회사’인 관계로 대출이나 금융활동 시 소유지분율에 따른 ‘비율책임’을 지님(유한책임).
 - 미국-중국-일본 공히 ‘주식회사’의 대표자에게 한국식 연대보증(독소조항 포함)은 법률적 근거가 없음(즉, 위법 사항임)
 - 일본의 경우, 주식회사 대표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할 경우, ‘경영자보증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 우리의 경우는, 민법과 상법에서 법률로써 연대보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소결론 >

회사법을 단행법화 하면서,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자 연대보증을 법률로써 금지

IV. 인수합병(M&A)

1. 인수합병제도의 총론적 고찰
2. 미국(영국)의 벤처기업(과학기술기반 스타트업)의 인수합병 지원정책
3. 중국의 벤처기업(과학기술기반 스타트업)의 인수합병 지원정책
4. 일본의 벤처기업(과학기술기반 스타트업)의 인수합병 지원정책
5. 한국의 벤처기업(과학기술기반 스타트업)의 인수합병 지원정책
6. 4개국 벤처기업(과학기술기반 스타트업)의 인수합병 지원정책의 비교 및 발전적 개선 방안
 - 기재부에서 2015년 2016년 M&A 활성화를 위한 대책 발표
 - 사모펀드의 참여 확대를 위한 내용이 주된 기조 임
 - M&A는 스타트업이 회수할 수 있는 가장 실효적 창구 임. 영미국가들의 경우 약 85%가 M&A 및 IPO를 통해 회수
 - 우리의 경우는 M&A를 통한 회수 사례가 매우 낮은 비율임(10% 미만)
 - 한국의 M&A 활성화가 어려운 부분은, 사모펀드의 참여가 제한적이거나 관련 제도의 문제가 아닌, “징벌적손해배상제도”에 있음
 - 영미국에서는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존재하기에, ‘일감-기술-사람 빼가기’가 구조적으로 불가능 함. 따라서, 대기업들이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의 ‘사업무문-기술-인력’의 흡수 목적으로 M&A를 적극 활용 함
 - 또한 사내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이 활성화 된 관계로 M&A가 활성화 되어 있음.

< 소결론 >

우리의 경우도, “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 실효적 도입과 “사내벤처캐피탈”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M&A 활성화를 위한 가장 핵심적 사항임

V. 제도 및 정책 개선 방안

1. 회사법 개선방안 요약
2.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 요약
3. 인수합병(M&A) 개선방안 요약
4. 과학기술기반 벤처기업생태계의 선순환적 성장을 위한 제도 및 정책 개선 방안